

음식물류 폐기물 委 · 受託 처리 계약(안)

성북구청장(이하 「위탁자」라 한다)과 (주)해원(이하 「수탁자」라 한다)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·수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위탁자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탁자가 설치·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음식물류 폐기물”라 함은 식품의 생산, 유통, 가공,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·수·축산물류 쓰레기와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,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.
- ② “시설”이라 함은 「수탁자」가 설치·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910번길 106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.
- ③ “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”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사료(퇴비) 등으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음식물류 폐기물 공급)

- ① 「위탁자」는 「위탁자」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어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「수탁자」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까지 운반·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「위탁자」가 「수탁자」에게 위탁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급량은 1일 20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「수탁자」의 시설 여건 및 「위탁자」의 수거물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증감시킬 수 있다.
- ③ 「위탁자」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「수탁자」의 시설에 위탁 처리함에 있어서 비닐, 유리병, 플라스틱 등 처리 곤란한 이물질이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)

- ① 「수탁자」는 폐기물관리법, 환경보전법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「수탁자」는 「위탁자」에게 수탁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, 시설고장, 가동중단, 기타 사유 등으로 정상 처리가 안 될 경우 「위탁자」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「수탁자」는 별도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「위탁자」는 제2항의 경우에 「수탁자」에게 위탁한 물량을 별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「수탁자」의 재활용 처리 중에 발생한 이물질은 「수탁자」가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「위탁자」가 「수탁자」에게 지급한 위탁처리비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 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)

- ① 「위탁자」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수탁자」에게 지급하며, 「수탁자」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간 처리량을 산출 증빙자료(공인계량증명서) 첨부하여 서면으로 「위탁자」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 1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: 1톤당 107,000원(이물질 처리비 포함)으로 한다.
 2. 지급방법 :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「수탁자」의 은행계좌에 입금.
- ② 계량은 「수탁자」의 처리시설 내에 설치된 공인계량장치 또는 외부 공인계량장치를 이용하여 계량하며 그 비용은 「수탁자」가 부담한다.

제6조 (계약의 효력, 기간)

본 계약의 효력은 2015. 1. 1일부터 발생하되 계약기간은 2015. 12. 31 까지로 하며,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「위탁자」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
제7조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관계법령의 변경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계획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계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위탁자」, 「수탁자」 쌍방 합의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- ② 「위탁자」, 「수탁자」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1. 「수탁자」가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「위탁자」가 판단하였을 때
 2. 「수탁자」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 받았을 때
 3. 「수탁자」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
 4. 「수탁자」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「위탁자」가 판단하였을 때
 5. 「위탁자」, 「수탁자」 쌍방합의가 있을 때
 6.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
- ③ 「위탁자」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하는 경우나, 「수탁자」의 시설에 문제 발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상호 통보한다.

제8조 (손해배상 및 책임 등)

- ① 「수탁자」는 「위탁자」에게 수탁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공급한 농·축산가의 피해 등을 이유로 「수탁자」가 「위탁자」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「위탁자」가 제3조제2항의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타 시설에 위탁 처리시 제4조에 의거 「수탁자」에게 지급하는 위탁처리비 초과분 등의 손해 상당금액은 「수탁자」가 「위탁자」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「수탁자」는 본 계약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탁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·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「위탁자」에게 전가할 수 없다.

제9조 (지도 · 감독)

「위탁자」는 「수탁자」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으며 「수탁자」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위탁처리에 대한 이행보증)

「수탁자」는 계약개시 이행일 전까지 계약금액(총단가×위탁물량)의 10/100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보칙)

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련조례 등 제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

제12조 (관할법원)

본 협약에 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「위탁자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3조 (계약서의 작성)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면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2월 일

「위탁자」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(삼선동5가)
성북구청장 김 영 배 (인)

「수탁자」 :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910번길 106
(주)해원 대표 한 정 희 (인)